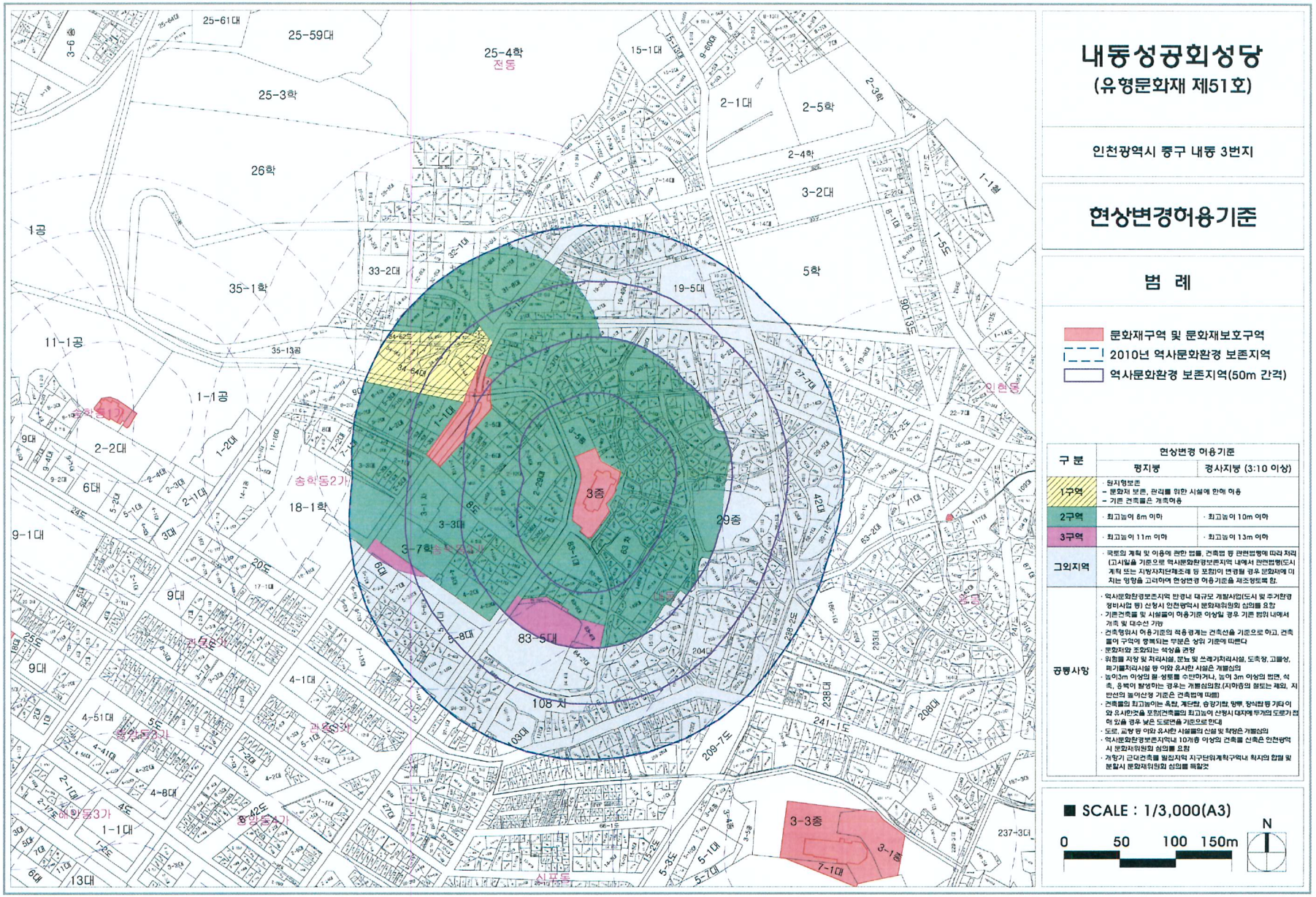

내동성공회성당
(유형문화재 제51호)

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3번지

현상변경허용기준

범 례

-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
- 2010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50m 간격)

구 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 (3:10 이상)
1구역	· 원지형보존 – 문화재 보존, 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 – 기존 건축물은 개축허용	
2구역	· 최고높이 8m 이하	· 최고높이 10m 이하
3구역	· 최고높이 11m 이하	· 최고높이 13m 이하
그외지역	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(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(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)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.	
공통사항	·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반경내 대규모 개발사업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) 신청시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· 기존건축물 및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·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이 구역에 걸쳐지는 부분은 상위 기준에 따른다 ·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상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· 높이3m 이상의 옹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벌채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.(지하층의 철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·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포함(건축물의 최고높이 산정시 대지에 투계의 도로가 접해 있을 경우 넓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) ·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·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10개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요함 ·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확지의 합필 및 분할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득할것	

■ SCALE : 1/3,000(A3)

0 50 100 150m

N